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복원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란(안 제2조)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

### 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주체(안 제2조)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조직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제7조)

- 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정보·행정·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 매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

3)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교육연수, 전문가의 파견, 사례현장의 견학, 활동 공간의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하여 선정(안 제6조)

마. 살기좋은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1) 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평가 등을 심의·의결.

2)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

일반주민,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공무원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5)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6)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3. 제정근거: 관계법령 없음**

**4. 조례안: 따로붙임**

**5.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9.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11. 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 ②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마을만들기 사업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④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발달·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외국인 주민의 지원 및 국제교류 사업
5. 방법·방재 사업

6.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 자원 재활용 사업
8. 도시농업 및 도농 교류, 안전한 먹을거리 사업
9. 절수 및 빗물활용 사업
10.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11. 주거환경 및 공공 공간 개선사업
1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13. 마을소식지 등 마을정보의 발신 및 교류 사업
14.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주민 및 사업주체의 책무)**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마을에 사는 주민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지원한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 또는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공모사업의 선정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해당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 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① 사업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교육 연수, 전문가의 파견, 사례현장의 견학, 활동공간의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분석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

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안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일반주민
2.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3. 마을만들기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